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문서번호	DIST-B-307	
		제정일자	2011.12. 1.	
		개정일자	2016. 6. 1.	
			페이지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적·물적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실험·실습실에 출입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단, 실험실의 유형 및 규모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시험실, 실습준비실 그 밖에 실습장비 및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실 책임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실험·실습 등의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학과(전공)의 장을 말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해당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담당교수(정), 행정·실습조교(부))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에 종사(수업)하는 대학생·교직원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8.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9.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문서번호	DIST-B-307
		제정일자	2011.12. 1.
		개정일자	2016. 6. 1.
		페이지	2/7

10.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4조(연구주체의 장)


- ① 대학의 총장을 말하며,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야 할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고조사표를 근거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등록관리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3.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4. 연구실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특별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관리
5. 안전관리비의 예산책정 및 건강검진,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주관
6.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8.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관리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제6조(연구실 책임자)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해당 연구실 내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과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2. 해당 연구실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유해인자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문서번호	DIST-B-307	
		제정일자	2011.12. 1.	
		개정일자	2016. 6. 1.	
			페이지	3/7


3.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정,부) 지정
4. 연구활동종사자 지도·관리·감독
5.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훈련 시행
6. 연구실 일상 점검일지 확인
7.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8.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제7조(연구실 안전담당자) 연구실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훈련 및 지도
2.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점검일지 관리
3. 연구실의 시설물·시약·폐기물 및 기타 위험물 등의 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
5. 기타 연구실안전에 필요한 각종 규정 준수 및 지도

제8조(위원회)

- ①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학처장, 산학협력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공학 및 자연계 열학과(전공)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문서번호	DIST-B-307
		제정일자	2011.12. 1.
		개정일자	2016. 6. 1.
		페이지	4/7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제9조(교육훈련)

- 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할 의무가 있다.
- ②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별표2에 준용한다.
- ③ 교육훈련의 방법은 집체 및 사이버 교육, 교육자료 배부 등이 있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 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련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각 연구실의 안전담당자는 안전환경관리규정, 일상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식 등의 안전관련 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 4 장 안전점검 및 진단

제11조(안전점검)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실험·실습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②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각 연구실 안전담당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문서번호	DIST-B-307
		제정일자	2011.12. 1.
		개정일자	2016. 6. 1.
		페이지	5/7

③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시설, 장비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제10조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서 정하는 일 정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조사·평가를 말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제10조2(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환경관리 및 안전관리비

제12조(안전환경관리) 연구실 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안전표지 설치
2. 소화설비 및 소화기 비치
3. 유기용제 및 위험물관리
4. 구급용품 비치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구 착용 등


제13조(실험·실습 폐기물 처리)

- ① 연구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는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체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반드시 종류별로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위탁 처리한다.

제14조(안전관리비 확보)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비 사용용도) 실험실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비 및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문서번호	DIST-B-307	
		제정일자	2011.12. 1.	
		개정일자	2016. 6. 1.	
			페이지	6/7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구급용품 구입비

6.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비

7. 그 밖의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6조(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상금액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 6 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제18조(연구실 사고 처리)

①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 안전담당자 또는 책임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손상이나 대물피해, 환경오염 등이 동반된 중대한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 안전담당자 또는 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사고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처리 결과보고가 미흡한 경우 해당 연구실 책임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사고의 경위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발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비상대응계획)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각 연구실에 전파하며, 연구실 책임자는 필요한 세부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한다.

제20조(시정요구)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책임자가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학교에 피해가 발생 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실 책임자가 사고를 은폐한 경우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문서번호	DIST-B-307
		제정일자	2011.12. 1.
		개정일자	2016. 6. 1.
		페이지	7/7

제2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